

## # Summary of Facts and Submissions

### ## I. 상고심에 대한 항소

상고인(특허권자)은 유럽특허 제 1525187이 무효화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고인(특허권자)은 유럽특허 제 1525187이 무효화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 ## II. 대응인의 반대 통보

대응인 I부터 III(반대자 1부터 3)는 특허 전체가 무효화되도록 요청하는 반대 통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히 특허법 제100(a)조에 따른 신규성 부족 등을 근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서가 인용되었다:

- (1a) RU899538 (영어 번역)

### ## III. 반대심판부의 판단

상고심 판결에서, 반대심판부는 현재 주요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항 1의 주제(즉, 특허가 부여된 상태) 및 보조 청구서 2부터 4의 주제가 문서 (1a) 등에 공개된 내용과 비교하여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보조 청구서 1의 주제는 유럽특허법 제123(2)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청구서의 청구항 1은 다음과 같았다:

> "우레아 공장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는 압축 섹션, 고압 합성 섹션, 우레아 회수 섹션(우레아 용융체가 형성되는 곳), 선택적으로 우레아 그라우팅 섹션을 포함하며, 특징은 우레아 공장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멜라민 공장이 추가로 설치되며, 우레아 공장의 우레아 회수 섹션에서 생성된 우레아 용융체가 멜라민 공장으로 전체 또는 일부로 공급되고, 멜라민 공장에서 발생하는 잔류 가스가 전체 또는 일부로 고압 합성 섹션 및/또는 우레아 공장의 우레아 회수 섹션으로 반